



코인의 유통화 중단 선언과 관련하여 상장회사 및 대표이사 가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으로 기소된 사 건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사례

2025.07.21

검찰은 상장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인 A 코인과 관련하여, 상장회사의 대표이사가 A코인의 유통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공지함으로써 상장회사의 주가 하락을 방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상장회사 및 대표이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코인에 대한 허위 공지를 이유로 상장회사 주식에 관하여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기소된 최초의 사례로서, 법무법인(유) 세종은 상장회사를 변호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5. 7. 15. 상장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A 코인은 2022년 초 유통화에 관한 시장의 우려로 코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자, 상장회사의 대표이사는 투자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위 코인의 유통화 중단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들이 위 선언과 달리 A코인을 계속 유통화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A코인의 유통화를 중단하겠다고 투자자를 속여 상장회사 주가의 하락을 방지하려 한 것이므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표이사와 상장회사를 기소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무법인(유) 세종은 위 사건에서, 유통화 중단 선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과 함께, A 코인과 상장회사 주식은 법적 성격, 유통시장, 규제체계 및 투자자층이 근본적으로 상이하다는 점을 근거로 유통화 중단 선언은 가상자산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상장회사 주식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상장회사의 수익구조, 사업 포트폴리오, 해당 시점의 주가 흐름, 가상자산 시장과의 연계성 등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피고인들의 행위와 상장회사 주가 변동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변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적용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은 상

장회사 주식이고, 이는 A 코인과 법적 성격, 발행 주체, 유통 시장, 규제 등이 확연히 구분된다는 점을 근거로, **유동화 중단 선언은 A 코인 및 그 이용자에 대한 것이고, 상장회사 주식 투자자에 대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금융투자상품 가격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사정만으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의 요건인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에 대한 '거래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상장회사의 주된 수익이 A 코인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점, 상장회사 주가와 A 코인의 가격이 항상 연동되는 것이 아닌 점, A 코인 가격과 상장회사 주가의 변동과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거래관련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본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가상자산 가격과 발행회사 주가를 연동시켜 가상자산에 관한 행위를 자본시장법위반으로 기소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따라서 이 판결은 **가상자산과 금융투자상품 간의 법적 성격을 분명히 구분하고, 가상자산을 둘러싼 형사책임의 범위와 자본시장법의 적용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과 그 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며, 시장에 대한 간접적 영향이나 우회적 해석만으로 형사처벌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리적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서,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중요한 선례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2024. 7. 19.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입법의 공백이 있었고, 자본시장과는 다른 관행과 실무가 형성되어 있었으나, 검찰은 과거에 이루어진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행위들에 대해 자본시장법상의 법리를 기준으로 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가상자산과 자본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 형사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가상자산과 관련된 다수의 형사사건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현재 진행 중인 다수의 가상자산 사건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구성원

하태헌

변호사

02-316-4458

thha@shinkim.com

이민현

변호사

02-316-1687

mhlee@shinkim.com

김성진

변호사

02-316-7909

sjkim@shinkim.com

김민주

변호사

02-316-2809

mjukim@shinkim.com

박예진

변호사

02-316-1881

yjinpark@shinkim.com

Copyright SHIN & KIM LLC. All rights reserved.